

WTO/TBT 통보문은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제·개정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총괄은 외교부 세계무역기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인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2007년 2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knowtbt.kr](http://www.knowtbt.kr)) →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 [tbt@kats.go.kr](mailto:tbt@kats.go.kr)]



- 대상기간 : 2013년 8월 19일 ~ 9월 20일(5주)
- TBT 통보문 건수 : 35개국 117건(부록·수정문 포함 39개국 166건)

〈국가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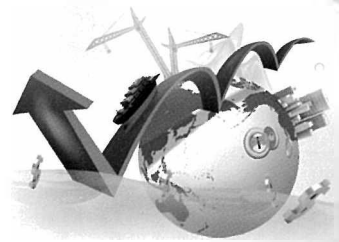
국가	건수
그루지아	1
남아공	1
뉴질랜드	1
니카라과	1
대만	5
러시아	4
모잠비크	1
올도바	1
미국	7
브라질	5
사우디아라비아	2
스위스	2
싱가포르	2
아랍에미리트	10
에콰도르	2
엘살바도르	1
우간다	20
우크라이나	1
유럽연합	5

국가	건수
이스라엘	2
이집트	1
일본	1
콩고	3
중국	5
칠레	2
카타르	3
케냐	3
콜롬비아	2
쿠웨이트	13
태국	3
트리니다드토바고	1
페루	2
프랑스	1
한국	2
호주	1
<b>총합계</b>	<b>117</b>

〈대분류별 통계〉

분류	건수
건설	3
교통/안전	7
기계	4
농수산물	2
소재나노	1
생활용품	9
식의약품	46
에너지	5
전기전자	11
정보디지털	3
화학세라믹	23
기타	3
<b>총합계</b>	<b>117</b>

주요  
내용



칠레 G/TBT/N/CHL/236

###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및 분석 프로토콜 초안

[전기전자]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칠레 경제개발부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및 분석 프로토콜에 대한 초안을 발표했다. 본 통보문은 가정용 드럼 의류건조기 제품의 에너지효율 인증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IEC 6122과 부합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본 초안에 대한 추가정보가 있어야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의제기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한 상태이다.

- ◆MEPS 규제 외 라벨 요구사항 유무와 라벨 도안 제공 여부
- ◆칠레 외 소재 시험소 성적서 인정 여부
- ◆규제 발효 예정일 및 기준일(통관일 혹은 제조일)은 언제인지 여부

품목(HS Code)	8451.21, 8451.29
對 발행국 수출액	514 (2012)

대만 G/TBT/N/TPKM/141

### 제품심사법에 의거한 공고 :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규제

[전기전자] 광응용기기(조명 등)

대만 표준계량검사국(BSMI)는 제품심사법에 의거해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를 법적검사 대상 상품으로 규제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본 공고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부터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는 BSMI에 의해 반드시 검사되어야만 하며, 수입되거나 시판될 때에 검사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번 공고는 적용 가능한 적합성평가 절차 또한 제공하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두 가지 다른 적합성평가 절차, 제품인증등록(RPC) 또는 형식승인 일반검사(TAB)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Performace(IEC 62612) 기준은 현재 유럽 ENEC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대해 대만 BSMI 인증을 진행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만의 표준이 국제표준과 흡사하므로, CB 성적서 제출 시 적합성평가절차 면제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품목(HS Code)	8539
對 발행국 수출액	9,312 (2012)